의 안 번 호			제	호
의		결	2019.	
연	월	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	

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19. 10. 7.

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호

제출연월일: 2019. 10. 7. 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1. 제정이유

- 가. 고성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,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이 고성의 경쟁력임
- 나. 고성군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목적, 정의, 군수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급액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지급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10조)
- 마. 바우처 사용 및 가맹점 지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6조)
- 바. 대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(안 제17조~제1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청소년기본법」제49조제3항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- 다. 합의

- 1) 기획감사담당관: 법제심사, 규제심사
- 2) 복지지원과: 성별영향분석 평가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19-1226호
 - 가) 예고기간: : 2019. 9. 11. ~ 2019. 10. 1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비용추계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의 청소년에게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청소년 꿈키움 바우처"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고성군의 사회보 장적 금전을 말한다.
 - 2. "바우처카드"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 카드를 말한다.
 - 3. "보호자"란 청소년의 친권자·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 - 4. "가맹점"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고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.
 - 5. "사용자"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- 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,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매년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,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③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
- 제4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꿈키움바우처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

- 라 한다)를 둔다.
- 1.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2. 가맹점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1. 행정복지국장,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
- 2. 군의원
- 3. 청소년 대상 기관, 단체의 관련자
- 4. 사용자, 가맹점 대표
- 5. 청소년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- 제5조(지급대상) ① 군수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한다. 단, 바우처의지급연령은 해당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년도 바우처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.
- 제6조(지급액)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연령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: 월 5만원
 - 2.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: 월 7만원
- 제7조(지급 신청)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 또는 보호자,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바우처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·면장

- 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1. 청소년 증명사진 1매
- 2. 주민등록등본 1부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)
- 3.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
- 4. 법정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
- 5.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, 재직증명서, 위임장
- ②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수 있다.
- 제8조(지급 결정)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·면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하고,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.
 - ② 군수는 청소년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,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.
- 제9조(지급시기 및 지급방법) 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급을 결정한 청소 년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 월까지 매월 지급한다.
 -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.
- 제10조(지급 정지 및 환수 등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 - 1. 지급대상자가 사망, 관할 구역 외로의 전출,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
 - 2.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
 - 3. 제15조를 위반한 때
 - 4.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

- 제11조(바우처의 사용지역)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고성 군 내로 한다.
- 제12조(가맹점 지정 및 관리) 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,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.
 - 1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 점포
 - 2. 「청소년보호법」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
 - 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부터 제2조제3항까지의 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자
 - 4. 그 밖에 군수가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
- 제13조(가맹점 준수사항)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
 - 2.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
 - 3.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
 -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가맹점 지정 취소)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제15조(사용자 준수사항) 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

-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.
-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사용자는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,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.
-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.
- 1.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
- 2.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, 절취,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
- 3. 주류, 담배(전자담배 포함)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재하는 경우
- 제16조(이월 및 사용기한)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단, 연도 간은 이월할 수 없다.
 -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,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.
- 제17조(대금의 지급)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.
- 제18조(카드의 관리 등)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9조(시행규칙 등)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[별지 제1호서식]

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서(꿈키움 카드 발급신청)

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			
주 소	'	연락처	자택: 휴대전화:					
바우처 사용 선택 (2개 동시신청 가능)	□ 꿈키움 카드 □ 큐알코드							
	본인(대리인 신청)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, 『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』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및 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							
고 성 군 수 _{귀하}	신청인(대	대리신청인) 성명 :		(서명 또는 인)				
	게이저ㅂ 人지	l·이용, 제공 동의서						
본인은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및 꿈키움 카드 발급을 위하여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 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기간								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주소,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	, 고성군 청소년			종료 시까지				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□ 예 □ 아니오								
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	제공목적	제공하는	하모	보유기간				
「고서구 처스너 꾸키우 바우처	금키움 카드 제작 및 관리	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가 족 구성원과의	전화번호, 주소,	사후관리 종료 시까지				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□ 예 □ 아니오								
본 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 법정대리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								
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청소년 및 보호자, 가구원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개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								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의 사

- 1.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시「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」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.
- 2.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 및 꿈키움 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
■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[별지 제2호서식]

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
1 가맹점정보 (전산등록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.)
사업자등록번호
상 호
주 소
연 락 처 매장: 핸드폰:
대 표 자 명 성별
2. 계좌정보 - ^
은 행
예 금 주
계 좌 번 호
(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. 정확히 기재 부탁드립니다.)
3. 단말기정보
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
(매장 내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꼭 기재해 주세요)
4. 결제방식(모두 신청 가능)
□ 바우처 카드 , □ 큐알코드
※ 첨부서류 :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,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
「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」 제12조제1항에 따라
위와 같이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.
20 년 월 일
대표자 (서명)
고 성 군 수 귀하

붙임

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관련조문 및 비용 발생 요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위한 사업비
 - 13세 ~ 15세: 월 5만 원/ 16세 ~ 18세: 월 7만 원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사업대상 :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3세~18세의 청소년

○ 사업규모 : 3,076명(2020년 기준)

나. 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 원)

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합계
세입	군비	2,332,188	2,242000	2,200,000	2,075,000	2,033,500	10,882,688
세출	군비	2,332,188	2,242000	2,200,000	2,075,000	2,033,500	10,882,688

다. 재원조달 방안: 2020년 ~ 2024년: 본예산(일반회계) 편성

구	분		1차년도	· ·	· -	· ·	5차년도	합계
	工		(2020년)	(2021년)	(2022년)	(2023년)	(2024년)	됩 /기
	의존	재원	-	-	-	-	_	_
재원	자체	재원	2,332,188	2,242,000	2,200,000	2,075,000	2,033,500	10,882,688
조달	기	타	_	_	_	_	_	_
	소	계	2,332,188	2,242,000	2,200,000	2,075,000	2,033,500	10,882,688

작성자: 복지지원과장 이 연 옥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청소년기본법

- 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